

성평등한 캠퍼스 문화 만들기

# GENDER STORY





## 인권·성평등센터 소식지 제 18호

발행일 : 2022년 2월 28일

발행 : 송준아

기획 : 노정민 김지원

편집 : 박찬혁

발행처 : 인권·성평등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동원글로벌리더십홀  
1층 101호 인권·성평등센터

\* 전화 02)3290-1700

\* 팩스 02)3290-2550

\* 홈페이지 [humanrights.korea.ac.kr](http://humanrights.korea.ac.kr)

\* 이메일 [humanrights@korea.ac.kr](mailto:humanrights@korea.ac.kr)

Copyrights. 2022 KUCHARGE. All rights reserved.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인권·성평등센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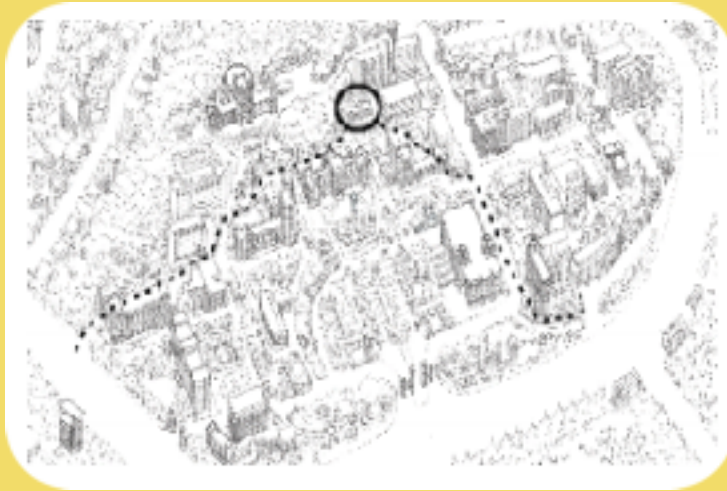
인권·성평등센터 소개	04
2021 돌아보기	05
나누고 싶은 이야기	06
코로나19와 장애학생교육	07
일-가정 양립 제도과 모성 이데올로기	10
온라인에서의 ‘나’는 안녕한가?	14
예술의 자유와 인권적 가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소고	17
자유인의 경계	22
한국 성별정정 제도의 문제점과 쟁점	27
차별금지법을 기다리며	32



# 인권·성평등센터 소개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는 **교내 규정에 따라 구성원들의 인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교내에서 발생한 **기본권리 침해 사안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성희롱·성폭력 및 성매매 그리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을 담당**합니다. **인권존중과 성평등한 대학 캠퍼스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기본권리 침해 예방 활동을 통해 고려대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성(gender)과 인권에 대한 바른 건강한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하여 개인의 존엄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안암역 2번출구에서 출발한다면,

정대후문을 지나서 타이거플라자, 국제관, 문과대학 뒷길, 다람쥐길을 따라 동원글로벌 리더십홀 1층 101호로 오시면 됩니다.

## 고려대역 1번출구에서 출발한다면,

오른쪽 계단을 올라와서 LG-POSCO관과 백주년 기념과 사이 오르막길, 대학원 도서관과 구법학관 셋길을 따라 동원글로벌리더십홀 1층 101호로 오세요!



# 2021 돌아보기



## 1학기 - 재난과 소수자

플랫폼 노동 3월

코로나와 여성노동  
미등록 외국인, 이주여성 차별 4월

이태원발 확산과 성소수자 혐오  
정치권의 성소수자 배제 5월

대안 달거리대 행사 6월

인권·성평등센터 20주년 7월

## 2학기 - 규범과 인권

9월 인권의 법제화

10월 한국의 돌봄정책과 불평등  
온라인 공간의 혐오표현

11월 북한 인권과 R2P  
예술과 인권  
한국의 성별정정제도  
한국의 비자제도와 난민법

12월 차별금지법



2021년의 인권·성평등 서포터즈 활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컸습니다. 매 학기 모임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오프라인 모임을 하자고 약속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고, 영화제 등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과 관련한 주제로 매주 심도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고, 대안 달거리대 행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대면이지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서포터즈 분들의 참여와 노력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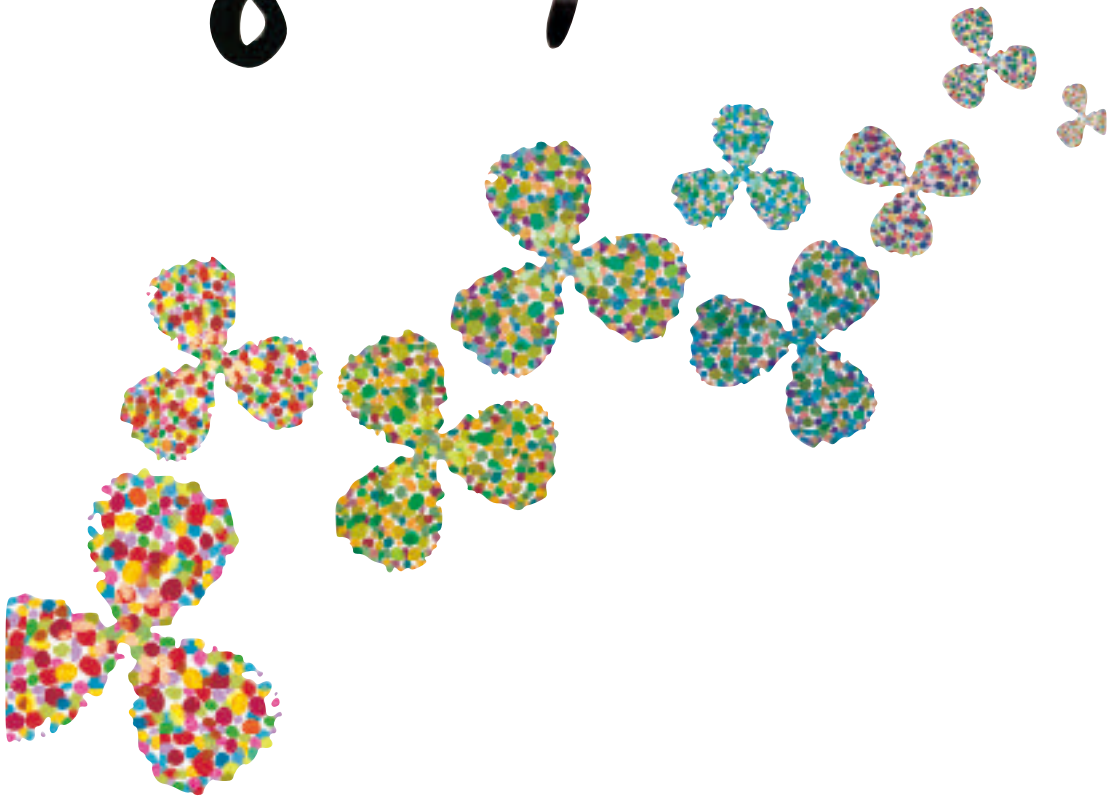


# 나누고 싶은 이야기...

---

지난 1년간 인권·성평등서포터즈 활동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 양지



# 코로나19와 장애학생교육

박찬혁

코로나19는 많은 일상을 바꿔 놓았고, 그 중에서도 교육 문제는 여러나라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의 질적 하락과 격차의 확대를 우려했다. 특히 교육 격차 확대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가지는 계급 이동의 수단으로서의 인식에 바탕 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이때문에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관심은 주로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의 확대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다만 교육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의 교육 등은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장애인 교육에 대한 문제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교육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기기 및 교재 등의 확보는 물론 이들을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비대면 시대의 교육에서 디지털 기기 확보 및 능력이 격차는 매우 쉽게 교육의 격차로 이어진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장애인 계층에서 디지털 기기의 보급 및 활용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포함된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일반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전체 취약계층의 상대적 역량 수준을 지수 형태로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PC)와 인터넷 보급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역량의 차이도 지수 산정에 포함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기술적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표1에 따르면 우선 다행인 점은 각 취약계층의 역량 수준이 매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에 34.6에 불과했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취약계층 평균	34.6	37.4	45.2	51.9	59.1	60.2
장애인	45.0	47.0	49.8	57.7	66.9	67.8
저소득층	66.8	67.2	69.1	78.5	85.3	86.5
농어민	40.7	41.2	46.2	53.4	63.0	63.6
고령층	23.4	29.6	34.9	41.0	50.0	51.6

디지털 정보화 역량, 통계청



전체 취약계층 평균 점수는 가장 최근 시기인 2019년에는 60.2로 크게 성장했다. 다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여전히 일반 가정의 디지털 기기 보급 및 활용 능력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교육이 비대면, 디지털로 이루어졌을 때 일반 가정 대비 취약계층에서는 교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세부 유형 별로 살펴보면, 2019년 저소득층의 역량 수준은 86.5로 가장 높았던 반면 장애인의 역량 수준은 67.8로서 전체 취약계층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역량 수준과 비교할 때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시점에서 장애인 학생이 겪고 있을 교육에서의 어려움이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어려움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애인 교육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 해준다. 특히 시각 장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큰 수준이었다. 기존의 대면 수업 방식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시각을 제외한 촉각 등을 사용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비대면 교육이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면서 교육의 효과성에 있어서 학생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신연서 등 (2020)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태블릿 PC 등의 활용에 익숙한 학생들의 경우 디지털 자료의 특징 덕분에 더 높은 성취도를 달성하기도 했다. 디지털 자료는 확대·축소가 자유로운 덕분에 약한 시각을 보조할 수 있었고, 이것이 더 높은 학업 성취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태블릿PC 등의 활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시각 장애를 겪고 있고, 디지털 시각 자료를 사용한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현장에서의 대부분의 교육은 유선 전화 및 메신저 보이스톡 등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미지도 많은 학생들은 시각 정보에 의존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고, 수업을 위해서 메신저 등에 접속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환경이 오히려 복잡함으로 다가와 수업을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촉각을 이용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시각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이료(물리치료)를 포함한 직업교육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촉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비대면으로 촉각을 통한 교육이 제한되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직업교육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친밀감 형성의 문제도 크게 지적되었다. 스킨십 등을 통해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친밀감이 형성되었을 때 수업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비대면 상황에서는 이러한 친밀감의 형성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목소리만으로 소통하는 교수자에게 시각 장애 학습자들은 이전 만큼 신뢰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었고,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일방적인 소통 단절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의 효과도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에 비하면 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는 덜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각 자료의 활용이 비교적 자유롭다보니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고, 자막 등을 통해서 부족한 청각적 경험을 보충할 수 있었다. 더하여 교실 환경과 달리 주변 소음을 통제하기 용이하고 소리 크기 조절, 반복 등이 자유로워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었던 점은 청각이 남아있는 학생들의 경우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상태에 따라 음질이 크게 떨어지고 일부 음역대가 소실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 해당 음역대를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시각 장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친밀감 형성이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현주 등 (2020) 에 따르면 절반이상의 청각장애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배려받지 못하다고 느꼈으며, 수업의 이해도 및 만족도 또한 대면 수업에 비해 떨어졌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도 디지털 자료의 활용으로 얻는 장점이 다른 단점들을 넘어설 정도로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수업 자료와 집중도에 대한 부담이 컸다. 한진희 등 (2020) 에 따르면 장애 학생의 발달 수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각 학생에 맞는 수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EBS 등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디지털 자료들이 일반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보니 발달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자료 제작의 부담은 모두 교수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EBS 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을 포함한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에서 2020년의 5년간 EBS에서 제작한 발달 장애 콘텐츠는 5개에 불과했다. 이는 시각 장애 127건, 청각장애 2천여건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수이다. 이해란 (2020) 등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콘텐츠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면 수업의 경우 교수자가 직접 소통하면서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었으나, 비대면 교육에서는 이러한 실시간 소통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대면 수업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흐트러진 집중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반면에 비대면 수업에서는 오로지 영상에만 의존하여 집중력을 끌어와야 한다는 점도 어려움을 야기했다. 많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각 가정 등에서 수업을 하게되었는데, 대부분이 주변의 상황에 이끌려 주의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학생은 동영상 수업 이후의 보상만을 받기 위해서 정답지를 보고 정답만 적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면 수업에서와 달리 이러한 태도에 대한 교정도 쉽지 않았다. 비대면 수업에서는 대면 수업처럼 옆에서 성실히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 등교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는데, 일정하지



못한 등교일을 학생들 및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공지되는 등교일을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장애 학생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알기에 정부에서도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 등을 마련 해주었지만, 교육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현장에서는 특히 기술적 교육 및 재원의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12년 장애인 정보격차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1.7%, 태블릿PC 보급률은 0.6%에 불과하여 디지털 기기 보급 측면에 있어서 이미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지향(2014)에서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이수한 경우 종합적인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디지털 활용 능력에 있어서의 격차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린 나이에 이런 교육을 받을 수록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은 어린 학생들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더 쉬운 수준의, 직접적인 교육 및 도움이 요구된다.

교육과 더불어 장애인의 기술적 역량의 향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으로 언급된 것은 각 장애의 성격에 맞는 보조 재원의 지원이다. 앞서 언급된 연구들에서도 제시되었다시피 친밀감 형성의 제한 등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와 무관하게 비대면 교육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장애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많은 경우 장애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디지털 자료와 태블릿PC 보급을 늘려 장애 정도가 약한 학생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간단하고 커다란 버튼 등을 사용한 앱 환경 및 점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개발, 특수보조 기기, 음성전환 앱 등의 보급 및 관련 교육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료 등 직업 교육의 측면에서는 비대면 교육의 불가능하므로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여 소수 인원으로도 대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속기사 지원 및 특정 주파수 대역을 변환해주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질적 저하를 크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 장애 학생들을 위한 단계별 학습자료 개발이 보조되는 것이 필요하며, 발달 장애 학생들 역시 인력을 확충하여 소수라도 대면 수업을 시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미향. (2020). 스티븐 호킹 와도 원격수업 어려워 “전쟁터 던져진 느낌...”.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1875.html>
- 송지향. (2014). 장애인의 스마트기기 사용능력 및 활용도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 21, 67-88.
- 신연서, 차향미. (202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각장애학교 교사 수업 경험 연구. 시각장애연구, 36(4): 147-168
- 이정현. (2020.10.25). 김상희 “EBS, 비대면 교육 증가에도 장애인 지원부족”.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184900005?input=1195m>
- 이현주, 이지연, 오은주, 장현숙 (2020). COVID-19 상황에서 통합학급 청각장애 학생의 온라인 수업 실 태와 요구도 조사. 특수교육논총, 36(3), 327-348.
- 이해란, 박창언, 이나영.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적장애 특수학교 초등특수교사의 온라인수업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문화연구, 26(5), 589-612.
- 한진희, 심재환, 정세원, 최진우. (2020). 코로나 19로 인한 발달장애 아동의 온라인 교육 문제 탐색 연구.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20(0), 1-31.



# 일-가정 양립 제도와 모성 이데올로기

최효정

일 가정 양립이란 개인의 일(Work)과 생활(Life)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원래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family)의 양립에 한정되어 사용되다가 노동관(勞動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남녀,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HRD 용어사전, (사)한국기업교육학회).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법률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 해당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의거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과 더불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여러 제도 유형들 중 대표적인 것은 유연근무제와 부모휴가이다. 유연근무제는 세부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가족친화법상의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모휴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협의의 출산휴가, 임신기 육아휴직 등), 육아휴직(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세부적인 제도들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후 적용대상(신청 가능 아동 연령)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2010년에는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생후 3년 미만에서 만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입양자녀를 육아휴직 대상 아동에 포함시켰다. 2012년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이 여성이 사용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여성의 직업 생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과 2016년에는 '아빠의 달'이라는 이름의 특례제도를 신설, 확대하여 부모의 두번째 육아휴직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였으며, 2020년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은 아직 더 많은 관심을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된 실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남성의 사용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여성이 높은 비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이 63.6%, 남성이 1.8%였다. 이것은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는 여성이 사용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식은 고용 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코로나 19 이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50대 여성노동자 3007명 가운데 자녀를 둔 여성 2명 중 1명은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조정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 그 가운데 45.8%가 권고사직, 해고를 여성과 임신부에게 먼저 시행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아 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여성은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82.1%, 초등 이하 자녀인 경우 75.5%, 중고등 이상 자녀인 경우 46.4%로 나타났다. 이때 초등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이 퇴직을 고려한 가장 주된 이유(중복응답)는 “자녀를 돌보줄 사람이 없어서”(73.2%)였고, 5명 중 4명 이상은 취업 시 현재 일자리의 ‘가족/자녀 돌봄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가족/자녀 돌봄 문제가 선결되어야 여성의 비자발적 경력단절 해소와 이들의 재취업이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의 여성 고용 불안정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 위기를 경험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원장은 “여성이 노동시장 내 온전한 노동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일-돌봄 병행 안착, 돌봄의 남녀 간 평등한 분배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주로 여성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다는 인식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가부장적 가정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젠더 불평등한 구조 하에 고용 시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 사이에서 여성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음이 코로나 19 이후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이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고용부의 발표에 따르면, 25529명의 해고인원은 전체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자 수의 약 3.4%가 포함된 수치라고 한다. 이러한 해고는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자가 해고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업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 대우는 인사 발령, 승진 불이익 등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남양유업에서는 2015년 육아휴직을 낸 직원에게 통보 없이 보직 해임을 단행하였으며,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 신청을 하자 출퇴근에 5시간 걸리는 천안의 물류창고로 발령시킨 사례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인상으로 인해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증가하였지만 동일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동일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져 사실상 육아휴직제가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 비친화적인 근무 환경이나 성별 분업 체계가 공고한 직장의 경우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경력단절을 나타내는 M자형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력단절여성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까닭에는 제도 자체의 결함이 지적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놓인 모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모성은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어머니로 갖는 성질로, WHO의 정의에 의하면 '실제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것 외에, 장래 아이를 낳아 마땅히 키워야 되는 존재 및 과거에 있어서 그 책임을 다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모든 여성이 해당되지만, 노인은 모성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더 나아가 역사적 젠더 권력 관계에 기반한 정의로는 모성을 '강제적 이성애와 자본주의하에서 남성의 생산적 노동에 대응하는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학비평용어사전)

모성 이데올로기가 일-가정 양립 정책의 기능을 어렵게 하는 예를 육아휴직 후 퇴사한 여성의 퇴사 과정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여성에게 비친화적인 노동시장의 근무여건과 고착화된 성별분업이 여성 노동자들이 육아 휴직 전부터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주요 배경이다. 그런데 분석 과정에서 육아 휴직 사용자에 대한 부당처우와 더불어 육아휴직 중 재발견하게 된 모성애가 육아 휴직 후 직장 퇴사를 결정하는 요인임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당처우 외에도, 여성 스스로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양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것을 육아휴직 제도의 예상하지 못한 반대효과라고 설명하며 사회 전반에 놓인 모성 이데올로기가 이들로 하여금 가사와 양육에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여성의 직업 생활에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에는 '모성임금 패널티'가 있다. 모성임금 패널티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아동 양육이 여성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해외 선행 연구에서는 남성은 아버지가 되면 부성임금 프리미엄(가정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 상승)이 발생하는 반면, 여성은 어머니가 되면 모성임금 패널티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은 사회적 투자인 동시에 경제를 성장,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 개인은 가정 내에서의 이러한 역할들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직업과 임금에 있어 불리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모성 임금 패널티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 간에는 임금이 약 6.6%가 차이났으며, 자녀 수에 따라서는 자녀 1명이 있으면 5.8%,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패널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면 모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우선 패널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면 모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우선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게 만들며 자녀 돌봄을 위해 근무 시간이 유연하고 비교적 근거리 에 위치한 직장을 선택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게 된다. 선택의 우선순위에 임금이 놓여있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중심 키워드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책임감'(또는 죄책감)이다.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과 남성에 비해 가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업무에 쓰는 시간과 양은 감소시킨다. 미디어에서 워킹맘을 다룰 때 주로 자녀를 돌보지 못 한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자녀가 있는 직장인 남성에 부여하던 이미 지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모성 이데올로기와 직업 및 가정 생활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거리를 제시해 보았다.

Q1. 일-가정 양립에 관한 세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책적 제안, 인식 개선의 방안, 기업 문화 개선의 측면 등)

Q2. 모성 이데올로기가 결국 여성의 직업 생활에 있어 '모성 패널티'라는 매커니즘을 형성하고 성불평 등한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모성 이데올로기를 사회속에서 (재)생 산 및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 할까?

더 나아가, 한국의 가족 관련 제도들 가운데 성평등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또 다른 제도는 어떤 것 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토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안리라. "사회적 방어 기제로서의 일-가정 양립 제도와 모성패널티 - 은행업 정규직 여성의 노동경험 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2020.2 (2020): 551-566.

박귀천 ( Kwi-cheon Park ). "성평등 관점에서의 일 · 가정 양립 관련 법제 개선 방향." 法學論集 25.4 (2021): 583-608.

오혜은 ( Oh Hea Eun ). "한국의 모성임금 패널티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4.3 (2017): 217-245.

서정미 ( Seo Jungmi ), and 김수영 ( Kim Suyoung ). "육아휴직 후 퇴사한 여성의 퇴사과정과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배경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4 (2016): 5-42.

<https://www.news1.kr/articles/?4424559>

<https://www.fnnews.com/news/202109070639209362>



# 온라인에서의 ‘나’는 안녕한가?

: 온라인 공간 내 혐오표현과 규제 현황

안새별

현재 우리는 현실에서의 ‘나’와 온라인에서의 ‘나’가 나뉘어 있는 가상공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은 현실과는 다르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조금 거친 표현을 쓰기도 하고 직접 만났다면 하지 못했을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를 넘은 성차별적 모욕이나 소수자 비하 발언, 패드립 등의 혐오발언이 하나의 인터넷 문화로서 고착화되고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성인의 64.2%가 청소년은 68.3%가 혐오표현을 접했으며, 청소년이 혐오표현을 접한 공간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등 82.9% 대부분 온라인 환경이었다.

지금까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표현은 대부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리되어왔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모욕죄보다 형량이 높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공연성과 특정 대상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발언이나 행동이어야 한다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는 다르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성립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귓속말이나 1:1 채팅에서의 성희롱 발언과 같이 공연성이 없는 경우도 처벌 가능하고, 특정성 성립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성희롱이 아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리되었고, 통신매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이라는 개념에 따라 이뤄지는 제재이기에 성차별적 구조 문제를 다루기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온라인 내 혐오표현은 특히 게임상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인기 있는 게임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그라운드, 오버워치 등은 모두 MOBA(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형식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높은 득점을 얻는 게임이다. 그 과정에서 인게임 채팅이나 보이스를 통해 도를 넘은 성희롱, 혐오표현, 패드립 등이 가감 없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청년참여연대가 오버워치 내 성차별,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4479명 중 96.2%가 오버워치 내 성차별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여성은 87%에 달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2020게임이용자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 중 성희롱과 성차별 피해를 겪은 게임 이용자는 16.7%로 나타났고, 2021게임이용자실태조사에서는 이보다 1.5배 가까이 증가한 26.6%의 피해자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게임 내 대처로는 ‘신고하기’ 기능이 있다. 게임회사들이 보이스 채팅과 인게임 채팅의 신고 횟수가 많은 계정에 대해 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실제로 게임이용자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대응방법으로 ‘게임회사에 신고한다’가 44.7%로 가장 높았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9.9%로 가장 낮았다. 다만 신고 사유에 고의적 아군 방해나 욕설 등이 있을 뿐 성차별이나 혐오표현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고된 후 채팅이나 계정이 단기간만 정지되는 등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2021게임이용자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신고 이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33.8%를, 비교적 경미한 처벌인 게임 내 커뮤니케이션 기능 비활성화가 64.6%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성희롱과 혐오표현 역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나,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다루어져 왔다. 사법기관 또한 게임 내 성희롱 문제는 모욕죄로 신고해야 쉽게 처리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연성의 성립요건으로 인해 게임 내 1:1 대화창이나 귓속말을 통해 혐오표현을 들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우며, 음성 대화 기능을 통해 혐오발언을 들었을 경우 화면 캡처나 사진 촬영만으로 그 사실 입증에 한계가 있어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2021년 1월에 여성 이용자를 성희롱한 게임 이용자에게 성폭력특별법 제13조에 근거해 벌금이 선고된 첫 판례가 나왔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여성 이용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발언을 남긴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게임 내 성희롱을 단순히 모욕이나 욕설로만 치부했던 과거에 비해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진전으로 보인다.

게임 내 성차별 문화는 게임 산업의 남성 중심적 구조와 무관하다고 보기엔 어렵다. 최근 게임계를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등 인기 있는 게임을 만들어낸 게임회사 ‘블리자드’가 2021년 7월에 캘리포니아 주 공정고용주택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이다. 그 혐의로는 여직원의 승진을 의도적으로 막거나 성차별 및 성범죄 행위, 성추행 사실 고발 직원에 대한 보복, 임금차별 등으로, 게임 이용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게임회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리니지, 블러드 앤 소울 등을 제작한 ‘엔씨소프트’ 역시 사내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났음에도 회사 측이 이를 묵인하고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페미니즘 문구가 담긴 티셔츠를 인증했다는 이유로 여성 성우가 남성 게임 이용자에게 지탄받고, 이후 넥슨이 제작하는 게임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 콘텐츠나 게임을 만드는 회사부터 성차별적 구조를 지니니 이들이 만들어내는 게임 콘텐츠에 성차별적



구조가 투영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온라인 내 혐오표현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공간과 맞물려 너무나도 쉽게 생성되고 있으므로, 어떠한 방식이든 혐오표현이 규제되어야 함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큰 규모의 플랫폼에서의 혐오표현은 그 방대한 규모로 인해 규제가 더욱 어렵다. 이를 위해 최근 플랫폼은 이용자의 신고와 함께 AI의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감지를 통한 표현물 삭제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AI 기술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기술에만 의지한 채 혐오표현을 통제할 순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규제의 주체에 따라 1) 정부규제 2) 시장규제 3) 자율규제 각각 온라인 내 혐오표현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정부규제는 앞서 언급한 법적 규제와 같다. 두 번째로 시장규제는 개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만든 규칙을 통해 혐오표현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각각의 커뮤니티 가이드에서 증오심 표현과 혐오 발언이라는 개별 항목을 마련해 이를 뚜렷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세운 것과는 별개로 이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이용자의 비판이 있다. 여러 플랫폼은 여성혐오나 성소수자 혐오 게시물은 내버려 두고 이러한 혐오를 인터넷 유머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편,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계정이나 쿼어 관련 게시물은 신고가 이뤄지면 너무도 쉽게 차단된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 자율규제는 개별 사업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규제를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KISO 정책규정을 만들어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해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검색어 삭제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사용하는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이 참여한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이 대표적인 자율규제이다. 이 행동강령은 사업자만이 아닌 정부와 이용자 또한 규제의 주체로 여기고 있다. 규제대상 표현물에 대한 이용자 교육 실시,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을 통한 신고 및 지원, 정부와 협력해 혐오표현에 맞서는 대항 표현 활성화 방안 및 비판적 사고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 그 실천사항이다. 온라인 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정부규제, 시장규제, 그리고 자율규제 모두 필요하나 어느 규제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예술의 자유와 인권적 가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소고

- 표현 범위와 창작 방식을 둘러싼 예술과 인권의 대립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민

## 들어가며

예술(藝術, art)은 학문·종교·도덕 등과 같은 문화의 한 부문으로, 예술 활동(창작, 감상)과 그 성과(예술 작품)를 총칭한다. 이때 ‘예술 활동’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 작품 창작<sup>1)</sup>은 보통 ‘표현의 자유’와 묶여 생각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타 영역에 비해 큰 ‘표현의 영역으로서의 예술’<sup>2)</sup>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인권 침해 논쟁이 격렬해지는 때에 본문의 문제 인식은 시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구의 실적은 미미한 상태이다.<sup>3)</sup>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예술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정의한 바가 없기 때문이며(표현의 자유에 간접적으로 의존), 이와 연관되는 두 번째 이유로서 선행 연구 없이는 예술의 자유가 어느 범위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예술의 자유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지는 원초적 의의와 그 안의 재적 혹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찾고, 단체 토의에서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편으로서 다각적 시각의 정립(특히 ‘인권과 성평등’을 기준으로)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예술의 자유가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인간의 행위가 위협받고 있는 시대, 인간의 정신활동 영역의 발현인 예술은 마지막까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 또한 예술은 인간의 정신활동 과정과 그 결과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모든 다른 인간의 활동이 자라는 토양이 된다(즉 인격의 표출행위). 그러한 예술은 국가가 결국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에 포섭되며, 국가가 지원하고자 하는 장르에 의하여 범주화된다(문화예술진흥법<sup>4)</sup> 등).

1) 이 경우 ‘작품 창작’은 구성물로서의 창작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물에 일상적/관습적 의미와 구별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창조 의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다이즘(dadaism)처럼 이미 제작된 사물에 기능적 의미 이상의 상징성을 주는 예술의 사조도 아우를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가 커질수록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표현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진다.

3)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다른 법 영역에 비해 예술법 내지 예술 규제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484건으로 표시된 연구 중에도 실제 본문의 문제 인식에 부합하는 연구는 10건 남짓이었다.

4)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도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예술의 법규정(이하 “예술법”)의 유래와 문제 의식

본문의 ‘예술법’이라는 표현은 규범에서보다 실제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현상 분석되는 측면이 두드러질 것임을 미리 밝힌다.

### 1) 법적 근거(헌법 제22조)와 의의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이는 1948년 헌법 제정당시 제14조 규정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따로 규정되지 않은 “스포츠의 자유”에 비해 “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별도 조문(제22조)을 통해 기본권의 영역으로 포섭되어 있다. 이 자체로도 비교적 놀라운 사실이며, 실제 독립된 개별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한 나라도 소수라는 점 때문에 비교법적으로도 놀랄 만한 일이다<sup>5)</sup>.

### 2) 예술법 및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는 원칙 합의에 대한 중요성

국가가 예술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예술법의 정의와 예술정책의 방향에 따른 분류와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즉 국가가 예술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무엇이 예술인가?’에 대한 이해), 즉 ‘방법론’에 있어서의 방식이 향후 예술의 모습(구상에서부터 창작, 유통까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술법의 규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인 예술을 딱딱한 개념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여타의 법 영역과는 달리 대개의 방법론에 맞춘 구체적인 서술을 할 수밖에 없다.

### 3) 실정법 내지 추상적 원칙으로서의 예술 규정이 직면한 문제들

관습적인 의미와 현실에서의 예술이 지닌 위상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 예술은 내용에 있어서 그대로 복사하는 재현은 예술인가, 주관에 의해 다시 구성하는 표현 등 창의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예술인가? (예술의 본질에 관한 물음)
-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수용될 수 있는가? (표현 예술 수단의 범위에 관한 물음)
- 어떤 작품을 “선량한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프레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5) 대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분위기로 볼 수 있는데 헌법 제21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2조 제정을 명확히 한 것은 헌법 제정자들이 예술을 학문과 함께 특별히 비중 있게 자유권으로 다루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 예술이 제한원리로서 인권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이전까지는 예술의 의미와 예술법의 도입 원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제 논의의 핵심은 '예술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자 제한원리'인 "예술의 자유"로 이동한다. 우리가 진행해 온 이야기를 통해 간략히 정리하면, 예술은 표현의 자유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발전된 국가형태의 구성 원리인 복지국가, 문화국가원리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예술의 자유는 예술이 무엇인가를 국가가 판단하는 관점에서 시대에 따라 기준이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며, 예술의 자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는 예술가가 자유롭게 창작하고 창작한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방식 전반에 걸쳐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예술의 자유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인가? 이하의 실제 사례를 보고 판단해 보자.

## 자유와 역설: 예술과 인권의 줄다리기가

### 1) 예술인가, 외설인가:



2014년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서, 전시실 중앙 구스타브 쿠르베의 작품 '세상의 기원' 앞에 앉은 벨기에 출신 예술가 드보라 드로베르티스는 관람객들을 향해 당당히 다리를 벌렸다. 후일 인터뷰에서 그는 "여성의 성기를 그리는 것은 예술이고, 보여주는 것은 왜 외설이냐"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퍼포먼스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인도 태생의 영국 조각가인 아니쉬 카푸어가 만든 이 작품은 깔때기 모양의 철제 터널과 돌덩이로 만들어졌다. '여왕의 질'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은 지난 2015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설치돼 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카푸어는 이 작품에 대해 "매우 성(性)적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 2) 아이디어와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고 완성된 작품의 원 소유주는 누구인가: 조영남의 ‘화투’를 중심으로

2016년, 가수 조영남의 저작물로 알려진 ‘화투’가 때 아닌 대작 논란에 휩싸였다. 조영남의 저작물이 실은 타인의 생산품이었고, 조영남 자신은 간단한 마무리만 더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비단 상업 미술계뿐 아닌 예술의 전 영역에서 ‘예술로 인정받으려면 어디까지 표현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사회규범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위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대작’을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본다면 이는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 애초에 계약 내용에 작품의 생산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급계약과는 달리 예술의 특수성이 개입되므로 달리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예술은 창작자의 표현 즉 가치관(자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1심의 의견을 인용하면 작품 창작 단계에 개입한 전원이 “독자적 작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은 다소 의문스럽다. 보조 작가로서의 지위만을 인정하고, 계약을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하는 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의문은 다음과 같다. ‘대작’은 보통 예술가와 제작자의 불일치로 발생한다.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판권을 획득하던 애초에 제작에 임할 수 있는 창작의 원천을 제공한 것은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예술가 측 주장은 타당한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통해 대금을 받고 작품의 소유권을 넘겨준 제작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자신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 3) 반사회적 혹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민감한 주제도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조영남의 ‘대작 논란’이 법적 공방을 벌이던 무렵에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바로 홍익대학교에서 벌어진 ‘일베 조형물 논란’이 그것이다. 조형물을 제작한 측에 따르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상징하는 손 모양의 조형물을 학교 정문에 설치하였는데, 밤사이 누군가 조형물을 파괴하였던 것이다. 부서진 조형물에는 의도로 추정되는 “너에겐 예술과 표현이 우리에게 폭력임을 알기를,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님을,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다른 권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는 문구가 쓰인 A4용지가 붙어 있었다. 대체로 네티즌들은 “미관을 해치던 것이니 그렇게 (파괴)된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위 사례에서 우리는 질문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동일한 방향의 질문-‘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생각해 보게 된다. 만약 훼손된 조형물이 다른 모양이었다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파괴행위는 위 사례만큼 주목을 받거나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 반대로, ‘미관을 해치고’ ‘반사회적 가치를 그 내용으로 하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적 규범을 만든다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조항에 따라 만들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표현할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초적 자유에 달려 있으므로 기본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을 우선한다면, 오히려 이를 억제하는 강압적 조항은 무효여야 할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인가는 재판관의 가치관에 따라 혹은 당대 사회인식에 따라 수밖에 없다.는 식의 느슨함은 결코 위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답을 확실히 정해 놓은 문제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쉽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지만, 얼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공동으로 숙의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 마무리

다소 모호한 표현이겠으나, “모든 학자들이 예술의 정의를 보편화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한 명의 예술 애호가이자 인권의 지지자로서” 예술의 성질에 대한 명료화와 예술의 자유가 인권과 불가피하게 충돌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그로부터 잠정적(혹은 이미 굵는 중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한계와 제한된 정보 접근성에 따른 본 연구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다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관련 문제를 가시화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서 그칠 것은 아니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많은 연구(특히 규범과 경험을 적절히 혼합한)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만 논의를 마친다.

## 참고문헌

- 박정인. (2018). 예술법의 의의와 분류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1(4), 57, 137-155.  
이소라, <조영남, 어떻게 4년 만에 ‘화투 그림’ 대작 사기 혐의 벗었나>(2020.06.25.),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51047000059>  
윤희정, <‘성기’를 소재로 한 예술작품 10선>(2017.01.13.), 《위키�트리 문화》, <https://www.wikitree.co.kr/articles/288602>  
4. <홍대 앞 일베 조형물 갑론을박... ‘표현의 자유vs 표현의 책임’>(2016.06.01.),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KXFLNOSCT>



# 자유인의 경계

정선영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지난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 이는 1988년 11월 장애인등록제 전면 시행 이후 31년 만의 일이었다. 장애등급제 도입 이전, 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제도는 거의 전무했다. 장애등급제는 자연스럽게 장애인 복지 지원의 기본적 토대가 되어, 서비스 지원에 있어 대상자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신체와 정신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인 장애등급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기에는 획일적이고 단순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도 문제였다.

2007년, 정부에서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재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등급 판정 절차가 변경되었고, 재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장애등급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이전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원한다면 각 장애유형별로 지정된 전문의에게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진단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되었다. 별도의 등급심사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짜 장애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심사제도를 통한 재심사의 칼바람이 몰아쳤다. 그 결과 2010년 4월 말에 이르자, 장애판정 누적건수 10만 3957건 중 35.9%가 하향 등급으로 조정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장애계의 불만이 불거진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활동지원 급여 수급 대상을 1급 장애인만으로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는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으로 이어졌다. 장애등급심사의 본래 목적은 예산의 절감과 복지 축소에 가까웠다.

2019년 7월 1일의 장애등급제 폐지 역시 완전한 폐지가 아닌 '단계적 폐지'로, 폐지의 시작을 의미했다. 장애를 의학적 '등급'이 아닌 '정도'로 변경되는 시선이 반영되었고,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필요도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종합조사표'는 여전히 기존의 의료적 관점에 기반을 둔 기능 제한 중심의 서비스 판정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필요와 사회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개인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로 요구되었다. 그러나 의료적 관점만으로 장애인을 규정하는 '종합조사표'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했다. 장애인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강화된 점수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언제까지 장애인이 장애를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이어졌다. 의학적 판정을 토대로 한 장애 판정은, 장애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전문에서, '장애'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소득보장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및 예산 확대, 판정 및 전달체계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 문제를 과제로 남겨두었다.

### 시설화된 삶에서 벗어날 자유, 탈시설운동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비장애인들의 인식 속에서 장애인은 '시설'에서 거주해야 하고, '특수학급'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분리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탈시설운동은 이러한 인식에 맞서 "좋은 시설은 없다"고 외친다.

탈시설운동은 장애인이 무조건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깨고자 하는 운동이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인간 보편의 개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탈시설'이라는 운동은 2010년이 지나야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설 거주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비민주적 운영구조의 문제, 시설운영비 착복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 복지 재단의 비리,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 비인간적인 시설에서의 삶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 거주 시설이 도심과 거리가 멀고 사람들의 발길에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 '시설'은 이처럼 기본적으로 배제의 공간이며, 사회 구성원 간의 서열화를 강화하는 현장이라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의 조미경 소장은 말한다. "수용시설의 설립 목적은 국가가 규정한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을 격리시킴으로써 이들을 통제하여 사회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함에 있다. '문제 있는 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의도된 수용시설의 특수성은 거주인을 비정상 범주로 낙인화함으로써 정상 범주를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서열화를 공고하게 만든다."<sup>1)</sup>

1) 탈시설 운동, 모든 '시설화된 삶'의 자립을 꿈꾸다 - 일다 - <https://www.ildaro.com/8598>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거주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3만 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다. 정신장애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숙자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 수를 반영하면 약 10만 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유럽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대형 시설에 장애인을 수용하는 방식은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1970년대부터 국가가 탈시설 정책을 추진했다. 스웨덴, 미국, 영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전후로 장애인 인구대비 시설과 지역 사회 서비스의 비중이 역전되어, 인구 10만 명 대비 지역사회 생활의 비중이 시설의 비중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탈시설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뒤늦은 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향유의 집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설 정책을 종결하고, 거주인의 탈시설을 위해 시설 폐지를 결의하여 추진해온 한국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향유의 집은 1985년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산하의 장애인 시설로 120명 규모의 장애인이 생활하던 대형 시설이었다. 2007년 이곳에서의 비리와 인권 침해 사태가 폭로되며 기존에 재단을 운영하던 가족을 대신해 장애인 인권 활동가와 사회복지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공이사회가 출범했다. 이 당시의 네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인권, 탈시설, 자립생활, 사회통합이다. 향유의 집의 전원 탈시설은 그러나 이사회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향유의 집에서 살던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 투쟁이 이미 2008년부터 이어져왔다. 이들은 '시설에 사느니 노숙이 낫다'며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 투쟁을 이어왔다. 탈시설 투쟁의 시발점이 된 한 규선 씨를 시작으로 '마로니에 8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2021년 3월 9일 날짜로 향유의 집에 거주하던 장애인 전원이 탈시설했다. 4월 30일 향유의 집은 시설 폐지를 신고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 투쟁을 이어온 '마로니에 8인' 중 한 명인 김동림 씨는 시설에서의 삶에 '독립적 생활도, 프라이버시도 없었다'고 말한다.<sup>2)</sup> 2살부터 19살까지 시설에서 살다가 자립한 유진화 씨는 '자신만의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sup>3)</sup> 음성꽃동네에서 거주하던 윤국진 씨와 박현 씨에게 시설에서의 삶은 똑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으며, 남이 정해준 시간 속에서만 살 수 있었다.

"저희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 이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걸 시설에서 나오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사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요?"<sup>4)</sup>

2) 장애인에 탈시설의 삶을... '시설 폐쇄'로 호소하다 -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991724.html>

3) 당신 곁에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장애인 유진화 씨, 이동훈 씨 이야기 - 닷페이스 - <https://articles.dotface.kr/righttolife8>

4) [인터뷰] "자유, 이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 비마이너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6>



##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2021년 9월 27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이 너무 협소해 10명 중 4명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과, 장애인등록제가 의학적 손상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 또 발달장애인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복지절벽'이라 표현될 만큼 복지 지원에서도 배제돼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발의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하고 모든 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 권리를 각자 필요한 만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의 관점에서 장애인은 사회적 무능력자로 간주되고, 앞서 언급했듯 자신의 무능력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고(이 과정에서 장애는 무능력과 사실상 같은 말로 쓰였다), 복지수혜자로만 인식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첫 걸음이다.

2020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68인은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하였다.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 조사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탈시설지원법>은 향후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쉽게 재단하고 편집하며, 사람이 살아가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게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누군가는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다. 이러한 자유인의 경계를 정한 것은 누구이며, 견고한 자유인의 경계를 해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애인은 오랫동안 질문하고 투쟁해왔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사회가 대답할 차례이다.



## 참고 자료

- 40년 동정의 대상에서 마침내 '권리의 주체'로...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 하민지. 2021.09.27.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19>
- “이제 장애계는 등급제 폐지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기록될 것”. 강혜민. 2019.06.20.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47>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일부 활동지원서비스 오히려 줄었다. 이창준. 2021.07.01.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010930001#c2b>
- 장애등급제 폐지, “희망고문인가?”. 이경하. 2019.10.15. 복지타임즈. <https://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89>
- 장애인등록제 폐지에 대한 논의 시작할 때다. 이재상. 2020.10.23. 미디어 생활.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91>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하여. 김도현. 2019.07.10. 창비주간논평. <https://magazine.changbi.com/190710-2/?cat=2466>
- 장애등급제 폐지. 31년간 험난했던 여정. 에이블뉴스. 2019.06.28.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625164447697690#z>
- 31년만의 변화. 박경석. 2019.06.27.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9586.html>
- 탈시설 배경과 역사, 그리고 필요성: 시설 밖으로 나가는 길. 조태홍. 2021.09.27.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41&wr\\_id=193](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41&wr_id=193)
- 탈시설 지원법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 국회의원 장혜영, 최혜영에게 물었습니다. 한슬. 2021.08.18. 닷페이스. <https://articles.dotface.kr/righttolife10>
- 저는 장애인 시설 이사장인데요, 시설을 닫기로 했어요: 좋은 시설이란 건 없습니다. 한슬. 2021.07.21. 닷페이스. <https://articles.dotface.kr/righttolife5>
- 장애인 시설 안으로 같이 들어가봅시다. 한슬. 2021.06.28. 닷페이스. <https://articles.dotface.kr/righttolife1>
- ‘장애인권리보장법안’발의... “장애서비스는 개인이 필요한 만큼”. 박예지. 2021.09.29. 소셜포커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6>
- 장애인권리법, 새 술은 새 부대에. 김예원. 2021.10.04. 경향신문.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0040300005#c2b>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언제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권다운. 2021.09.01. 미디어생활.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04>



# 한국 성별정정 제도의 문제점과 쟁점

박재현

## 트랜스젠더의 개념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은 “자신이 남성, 여성, 또는 그 밖의 성별이라는 개인의 깊은 느낌, 내재적인 감각”을 말한다. 그리고 성별정체성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성별은 남성이나 성별정체성은 여성인 사람’을 트랜스여성(transwoman), ‘지정성별은 여성이나 성별정체성은 남성인 사람’을 트랜스남성(transman), 남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을 비이분법적 트랜스젠더(non-binary transgender)라 한다.

##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

이러한 트랜스젠더는 현대에 들어 갑자기 생겨난 개념은 아니며 역사적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 20세기 초 성과학이 발전하고 성전환수술이 가능해지면서 트랜스젠더는 점차 의학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제정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3판에 ‘아동의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of childhood)’와 ‘성전환증(transsexualism)’이 등재되고, 1992년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질병분류 제10판에 동일한 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트랜스젠더는 의학적으로 정신장애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하여 트랜스젠더를 표준에서 벗어난 장애이자 의료전문가의 진단과 성전환수술이라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는 이른바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이 확립되었다. 의료적 모델은 단지 의료적 측면을 넘어 법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함에 있어 정신과 진단과 성전환수술을 요구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러하다.

성별변경은 1972년 스웨덴과 1980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두 나라 모두 성전환수술을 받았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다른 나라들의 성별변경 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면 의료 전문가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 받아야만 하는 이러한 제도들은 결국 트랜스젠더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의료적 모델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적 모델은 트랜스젠더를 표준에서 벗어난 존재로 바라봄으로써 트랜스젠더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한국의 성별정정 제도

한국에는 성별정정과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각 법원의 허가결정에 의해 성별정정이 이루어진다. 한국 법원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성별정정과 관련된 결정이 있어 왔지만 당시에는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어떤 법원에서는 허가를 하는 반면 어떤 법원에서는 불허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후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성별정정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했고, 『호적 예규 제716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해당 예규는 현재까지 총 8차례 개정되었는데, 다음은 가장 최신 개정본의 제6조 참고사항으로 성별정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다.

### ※ 제6조 (참고사항)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물론 하급심 법원에서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하급심 결정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여전히 대다수의 법원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허가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술했듯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트랜스젠더 중 성별정정을 하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2014년 발표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 231명 중 성별정정을 한 사람은 30명(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적은 수가 성별정정을 한 사람은 30명(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적은 수가 성별정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다.



또한 2021년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 성별정정을 시도하지 않은 50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드는 비용 때문에’라는 답변이 229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03명(40.0%)이 ‘법적 성별 정정 절차가 복잡해서’, 150명(29.5%)이 ‘의료적 조치에 따른 건강상 부담 때문에’라고 답하였다. 소수지만 ‘현재 혼인 중이기 때문에(4명)’,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3명)’라 답한 사람도 있었다. 의료적 수술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문제와 건강 악화 문제 등을 우려하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성별정정 조건의 문제점

#### 1) ‘생식능력 제거를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것

대법원은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신분 관계의 안전성을 해치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성별정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 2) 혼인 중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것

대법원은 2011년 결정에서 혼인 중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이유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되기 때문이라고 설시했다. 가령 여성과 혼인 중인 남성이 성별정정 후 여성이 될 경우 동성끼리 혼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다는 뜻이다.

#### 3) 범죄나 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별정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

대법원은 신청자의 병적조희, 전과조희, 신용정보조희, 출입국 사실 조희 등을 참고하도록 규정했다. 병역 회피나 범죄 은폐 등을 목적으로 성별정정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 미성년 자녀를 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관한 찬반 대립

성별정정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 중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는 찬반 논쟁이 뜨거운 부분 중 하나이다.

#### 1) 미성년 자녀를 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반대하는 입장

[다수 의견]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2) 미성년 자녀를 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찬성하는 입장

[반대의견1]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은 이와 더불어 그 자녀의 연령과 취학 여부, 부모의 성별 정정에 대한 자녀의 이해나 동의 여부,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부양의 모습과 정도, 기타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과 함께 그 성전환자가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을 가진 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일부로 포섭하여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성별 정정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충분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 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다.

[반대의견2]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미 부모의 전환된 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 등에서는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반대의견3] 성별정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외관이나 사회적 인식이 전환된 성으로 확립된 이후이기 때문에 등록부상에 성별이 정정되었는지 여부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면 외모의 변화 과정 등에서 이미 일어난 일일 것이고, 오히려 신체상의 변화에 익숙해진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로서는 부모의 성별정정에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 요약 및 제언

트랜스젠더는 지정성별과 성별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뜻한다. 20세기 초부터 트랜스젠더는 ‘의료적 모델’에 따라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존재로 여겨져 왔지만, 이는 옳지 못한 관점으로 현대에 이르러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의료적 모델’은 법적인 성별정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별정정과 관련된 법률이 부재하는 상황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성별정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기준으로는 ‘생식능력 제거를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받을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범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등이 해당된다. 이는 모두 트랜스젠더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적인 편견에서 기인한 조건들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을 내세우며 자녀가 받게 될 사회적 차별을 그 근거로 삼지만, 이는 존재하는 차별을 시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앞선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 트랜스젠더 당사자들 중 성별정정에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고용을 비롯한 수많은 영역에서 차별에 시달리고, 이는 트랜스젠더가 처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맞물려 이들이 겪는 차별을 영속화한다. 불합리한 성별정정 기준을 삭제하고



성별정정과 관련된 법안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차별이 차별의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자궁 있고, 남성기 없어도 남성" 수술 없는 성전환 첫 허가, 중앙일보, 고석현, 2021.10.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7275>>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제안, 대한변호사협회, 박한희, 2021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윤진수, 2020

대법원 호적예규 제716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2006. 09. 06

충분히 고통 받아야 성별 정정 가능하다?, 프레시안, 전홍기혜, 2006.09.0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1449>>

[판례평석]성전환자 성별 정정의 허용범위, 대한변협신문, 박상복, 2020.05.18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1>>



# 차별금지법을 기다리며

이채은

지난 11월 10일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쳤어야 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11월 9일에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심사기한을 임기말인 2024년 5월 29일로 또 한 번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누군가에게는 '14년을 기다렸으나 43초 만에 이뤄진 법'인 차별금지법에 관해 올해가 가기 전에 살펴보는 것으로, 다시 돌아온 기다림의 시간을 시작해보려 한다.

## ‘차별’을 ‘법’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차별’의 개념은 차별금지법이 규율하는 대상에 관한 것으로,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 등 10인에 의해 공동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하 차별금지법안)과 같은 해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이하 평등법시안)에서 규정된 바에 따르면 1) 차별금지사유, 2) 차별금지영역, 3) 차별행위, 4) 차별의 종류 등이 차별의 개념을 구성하고, 5) 차별의 예외 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차별의 개념에 포함된다. 즉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은 차별금지영역에서,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로서, 간접차별, 성희롱, 괴롭힘, 차별 광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단, 진정직업 자격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화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우선 지난 2월에 발표된 홍성수의 글 「차별이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의 의의」를 통해 차별금지사유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차별금지법 이전에도 차별에 관련된 법은 다수 존재해 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그 예시다. 이러한 법률들은 규율 대상이 개별 사유와 개별 영역으로 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차별 문제 일반을 다루는 일종의 기본법이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여러 사유와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복잡한 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차별금지법이 여성, 장애인, 이주자, 성소수자, 소수종교 신도 등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해온 법이

1) 이하 차별의 개념과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에 관한 설명은 홍성수, 「차별이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법과사회』, 66, 법과사회이론학회, 2021.2, pp.28-63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2) 특정 직무·사업의 본질상 불가피한 경우.



라는 사실은 널리 이해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까? 홍성수에 따르면 차별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보호대상인 소수자 집단을 특정하는 방법과 차별금지사유를 통해 규정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보호대상을 특정하든 하지 않든 차별금지사유는 전제되는 것이지만, 보호대상이 특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법률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별금지법안과 같이 차별금지사유만으로 차별의 개념을 규정할 경우,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면 대상과 무관하게 차별의 개념에 포섭된다. 가령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을 보호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는 데 반해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면 성별을 불문하고 차별금지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보호대상의 ‘대칭성’에 관해서는 차별의 ‘해악’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차별은 차별받는 집단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모욕하며, 차별을 조장하고 영속화시킴으로써 차별받는 집단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악을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차별행위의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차별금지법상 차별사유가 형식적으로 ‘중립’이나 ‘대칭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소수자 집단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며, 실제로도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석되고 운용된다는 것이다.

차별의 현실 자체가 복합적이고, 맥락에 따라 시점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매번 달라진다. 그러므로 다양한 차별 문제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을 특정하기보다 차별금지사유를 활용하여 차별금지법상 차별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법률에 명시된 차별금지사유는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유를 근거로 구별이나 구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홍성수는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또는 차별금지사유를 정하는 원리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차별금지사유로 구분되는 집단은 상당 기간 차별 받아왔고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 집단이고, **(소수자 집단)** 2) 차별금지사유는 고용, 교육, 재화 용역의 이용 공급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유의미한 요소가 아니며, **(합리적 이유의 부재)** 3) 차별금지사유는 생물학적, 태생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부가 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상당한 제한을 받으며, **(비자발적 요인)** 4) 차별금지사유로 부당하게 구분하는 것은 인간존엄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 **(인간 존엄 훼손과 차별 조장의 효과)** (후략)

이때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하는 형식 혹은 방법도 주목을 요한다. 차별금지사유는 사회의 구체적 맥락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특정 맥락에 맞는 사유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사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명시하여 법이 계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주요 차별금지사유를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다른 사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 가장 합당해 보인다. 이는 차별금지사유 말미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 등의 문구를 덧붙임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사회 내에 존재하는 차별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적 상황의 변화는 분명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조혜인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발의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국가인권위가 쓸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많아지며, 인권위원회가 ‘권고’보다 더 강제성을 지닌 ‘시정명령’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재는 피해 사실과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민법상 불법행위 소송밖에 없어 원고인 피해자가 모든 내용을 입증해야 하지만, 차별금지법에는 입증 책임을 배분하거나 전환하는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소를 제기한 단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피해자의 불리한 위치를 보완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

국가는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는 이를 위한 일반적인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은 국가가 사회의 차별을 점검하고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하는, 그리하여 평등권을 실현하게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법의 존재 여부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71.7%의 응답자가 차별을 겪은 상황에서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sup>3)</sup> 도움을 요청한 대상도 공권력이 아닌 친구나 지인, 가족이었다. 반면 일반평등대우법이 있는 독일에서는 60%의 사람이 차별을 겪은 상황에서 대응을 했다고 응답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수많은 경우에서 이전과는 다른 환경이자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의 역사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안에 관련해서는 위에서 인용한 자료 외에도 상당한 양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전개되어온 ‘사회적 합의’의 역사가 결코 짧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7년에 노무현 정부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개신교 등 종교 단체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물러섰다. ‘종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발의안의 차별 범위 항목에서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그 후 2011년부터 2013년 동안에도 차별금지법은 매해 발의되었고, 작년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지도 벌써 500일이 넘게 지났다. 올해도 6월과

3) 이상 조혜인 변호사의 설명은 박주연, 「차별당해도 ‘무대응’ 71.7%...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일다』, 2021.06.03., <https://ildaro.com/9056>, 접속일자 2021.11.29 참조.



8월에 평등법이 발의된 바 있지만, 한 해가 끝나가는 현재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미뤄지는 중이다.<sup>4)</sup>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할 때마다 실행 조건으로 돌아오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형성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3%가 ‘차별은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라는 데 동의했다. 차별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72.4%가 동의한 반면, 이런 차별 문제가 ‘자연적으로’ 완화·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32.1%만이 동의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87.2%가 찬성했다. 학교에서 인권·다양성 존중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90.5%,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찬성하는 의견은 88.5%였다.<sup>5)</sup> 올해 5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다수 시민들(81%)이 ‘만약 직장 동료가 동성애자임이 밝혀져 해고된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답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연령별로는 20대(91%)와 30대(93%)의 응답이 특히 높았다. 지난 6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되었고, 22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sup>6)</sup>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담론의 지형

김종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의 장을 분석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담론의 이면에 ‘정파성에 토대를 둔 이중화된 인권 담론’이 내재하고 있음에 주목했다.<sup>7)</sup> 구체적으로는 국내 미디어 환경 내에서 차별금지법 담론이 배치되고 재생산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일간지의 기사들<sup>8)</sup>을 비판담론분석과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을 통해 들여다보았다.<sup>9)</sup>

4)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 약력은 박주연, 「차별금지법 제정,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회에게」, 『일다』, 2021.11.11., <https://ildaro.com/9197>, 접속일자 2021.11.27. 참조.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차별 범위 항목 삭제와 관련해서는 김영선, 「차별금지 항목 대폭 줄인 차별금지법 논란」, 『일다』, 2007.11.01., <https://ildaro.com/4109>, 접속일자 2021.12.01 참조.

5)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는 박주연, 「평등한 관계 원한다면 차별금지법을 미루지 말라」, 『일다』, 2020.07.27., <https://ildaro.com/8797>, 접속일자 21.11.27 참조.

6) 박주연, 2021, 앞의 글.

7) 이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담론에 대한 분석은 김종우,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담론 지형과 이중화된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129호, 비판사회학회, 2021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8)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요 일간지로 분류한 11개 신문사(『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200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발표된 기사 5372건을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9) 비판담론연구는 사회적 인지가 사회구조와 행위자의 연결을 매개하는 핵심적 차원에 주목하며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중시하는 질적 담론분석의 한 방식이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는 문서 내에서 잠재 의미를 추출하는 토픽모델(topic model) 방법 중 구조화토픽모델(Structural Topic Model)이 주제 집합을 요약,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김종우의 분석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는 종교와 성적 지향이 입법을 위한 제도화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주제로 나타난다. 지난 20년간의 언론 보도를 요약하여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어떠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동성애’, ‘교회’, ‘혐오’, ‘성소수자’, ‘목사’, ‘동성애자’ 등 종교와 성적지향 관련 어휘가 상위 20개 어휘 내에서도 상위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사들의 주요 주제를 도출한 결과 가운데 직접적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 세부주제를 요약하면 크게 제정 관련 논쟁과 개신교 우파 관련 주제로 범주화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적지향 및 이에 대한 개신교 우파 중심의 담론이 핵심 담론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담론 지형과 경합 이면에 정파적 이데올로기가 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기사들을 매체의 정파성에 따라 다시 분석하자 차별금지법 제정 논쟁을 소개하거나 차별금지법 관련 가짜뉴스, 혐오표현에 관해 다룬 보도는 진보적 정파성을 보인 반면 제정 반대 담론과 연관된 개신교 우파의 주장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담은 보도는 보수적 정파성을 띠는 것이 드러났다. 즉 개신교 우파와 성소수자 혐오 담론은 주로 보수 언론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김종우는 성적지향을 둘러싼 이러한 담론 경합의 핵심이 정치적 보수주의와 종교적 보수주의의 결합과 확산에 있다고 본다. 이 두 이데올로기의 결합은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 일반을 포함할 수 있는 교집합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은 신념과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논의는 보수적 가치를 수호하자는 담론으로 확장된다.

김종우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에서 반대 담론의 발화 양상이 점차 극단화된 시점은 박근혜의 탄핵 정국이 시작된 시점과 유사하다. 2017년 이후 극우적 이데올로기를 담은 텍스트가 SNS와 기존의 전통 매체를 통해 유포되면서 ‘반인권의 인권 담론’도 함께 확산되었다. 정치적 극단주의의 대두로 인해 성적 지향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전반에 걸쳐 극단화된 표현이 쏟아져 나왔고, 교회의 생존 위기에 관한 담론은 내적 결속에 대한 촉구로 이어졌다. 즉 차별금지법에 관한 성숙한 논의가 어려워진 것은 차별금지법 담론이 이성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는 정치의 공간이 아니라 믿음과 가치의 공간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성적지향이 종교 등 타협 불가능한 비가역적 가치와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차별금지를 위한 법률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는 것은 ‘진리 수호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김종우는 성적지향에 관한 논쟁의 이면, 보수적 개신교계가 주장하는 인권 담론의 이면에는 개신교와 정치적 보수주의의 친화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적 맥락성을 살펴보면 정치적 보수주의와 강한 친화력을 가진 미국의 신복음주의적 개신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한국 교회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찬양하고, 신앙으로서의 한미동맹과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한편,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자체 서사와 권위주의적 위계를 정당화함으로써 국가 질서에 순응하는 담론을 생산해왔다. 그 과정에서 반공주의는 한국 현대사의 이념적 흐름을 결정하는 동시에 보수적 개신교의 사상적 기초로 작용했다. 반공주의의 영향으로 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었으며, ‘공산주의적’인 것으로 의미화된 평등의 문제와



연관 지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논리가 형성되기도 했다. 반공주의는 반이슬람,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담론의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로 변주된다. 이념적 타자를 성소수자, 이슬람, 공산 세력으로 지칭함으로써 타자를 적대화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점에서는 같은 전략인 것이다.

인권에 대한 양극화, 이중화된 인식은 이처럼 정파적으로 상반된 차별금지법 담론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초점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담론에서 '인권'의 개념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타자의 인권은 '가짜 인권'으로, 내집단이 추구하는 인권은 '진짜 인권'으로 표상화된다. 인권이 보편적 가치의 기호인 동시에 소수자의 권리 배제를 정당화하는 기호로 쓰이는 것이다. 그리고 '찬성하는 측의 인권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인권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러므로 그들의 권리주장을 거부하는 담론은 인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논증이 등장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의 구도가 해소되지 않은 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김종우는 진단한다. 차별금지의 제도화는 하나의 첫걸음일 뿐인 것이다. 기존의 담론 구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 대중매체를 통해 양극화된 인권의 공론장을 최소한의 숙고와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바꾸어갈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임에도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정이 좌절되기를 반복해 왔다. 희망과 실망이 되풀이되고, 의미와 괴리된 말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허무하고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되어온 상황은 베케트의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끝내 유의미한 변화 없이 마무리된 부조리극과 달리 현대 한국 사회는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2021년 11월에 또 다시 시작된 기다림이 이번에는 빠른 시일 내에 끝이 날 기다림이기를 염원한다.



# 2022년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 모집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에서는 인권과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는 누구인가요?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의 학생 서포터즈는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알리고,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평등한 대학문화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동아리 모임처럼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며 학내에 건강하고 평등한 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며, 80% 이상 참석한 학생에게는 활동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교육 및 강연 참여  
인권·성평등센터에서는 ‘고려대학교에 인권·성평등센터가 필요한 이유’, ‘인권·성적자기결정권과 고려대학교 규정’, ‘생활 속에서의 차이와 차별’, ‘인권·성인지감수성’ 등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법적, 의학적 주제 등 인권과 젠더 이슈 전반에 대한 교육과 외부인사 초청강연회에 참여합니다.
- 캠페인 기획 및 진행  
인권·성평등센터가 학기 중 마련하는 인권과 성평등 바로 알리기 캠페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 서포터즈 소식지 제작  
한 학기 동안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포터즈 소식지를 제작합니다.
- 소모임 참여  
대안달거리대 만들기, 인권 및 젠더 이슈 전반에 관한 책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는 어떻게 지원 하나요?

Home page : [humanrights.korea.ac.kr](http://humanrights.korea.ac.kr)  
e-mail: [humanrights@korea.ac.kr](mailto:humanrights@korea.ac.kr)

자세한 사항은 인권·성평등센터(☎02-3290-1700)로 문의해 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